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1	2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	3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3	4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4	5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

1. 이용계약내용

-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 실행합니다.

2.계약목적

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수급자)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3. 입소대상

-노인요양시설에 입소가능한 분은 시설등급1~5등급 어르신

4. 입소 대상자 준비 서류

- 장기요양인정서(사본)1부
- 표준/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(사본)1부
- 어르신 주민등록등본1부
- 어르신 신분증(사본)1부
- 입소시 건강진단서(1개월이내) 1부(감염병진단여부확인)
- 처방전(현재 복용중인약)
- 연계기록지(타 요양원 및 주간보호 전원시)

5. 서비스내용

신체활동지원 서비스: 세면도움,구강관리,몸청결,머리감기기,옷단장,옷갈아입히기,목욕도움,배설도움,식사도움,체위변경,이동도움

- ① 정서활동서비스:말벗,격려및위로,생활상담,의사소통도움
- ② 의료지원서비스: 응급상황대처,투약 ,호흡기간호,피부간호,양양간호
- ③ 치매관리지원 서비스: 행동변화대처, 응급상황대처
- ④기능평가및훈련서비스:신체기능훈련,기본동작훈련,일상생활동작훈련,작업치료,물리치료,인지정신기능훈련

6. 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(1).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-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조성 및 질높은 서비스제공 의무)(단, 병원 입원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입소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, 수신하지 않는경우는 제외)

- ③ 표준/개인별이용계획에 따른 성실한 제공 의무
- ④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비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권리
- ⑤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권리

(2).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
- ④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-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- ⑥ 입소자의 권리: 입소자는 퇴소를 신청할수 있다.

(3). 신원인수인의 권리

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-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권리
-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③ 표준약관에 따라 입소자 면회 및 외박,외출에 관한 권리
- ④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내용에 대해 알권리
- ⑤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- ⑥ 입소자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
- ⑦ 입소자의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등을 요구할수 있는권리

(4). 신원인수인의 의무

신원인수인(보호자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건강, 병적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의무
-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기타비급여항목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③ 인적사항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의무
- ⑤ 입소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, 입퇴소절차, 입원비용등에 관한 책임의무
-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, 집기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7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본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됩니다.

월 이용금액의 20%는 본인이 부담하며, 보험공단에서 80%를 부담합니다,

비급여부분으로 식재료비, 간식비, 이미용비가 있습니다.

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의약품비용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특별한 경우,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은 비용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, 또한 감경대상자, 의료급여자는 8~12%의 본인부담금이 주어집니다.

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

등 급	급 여 비 용 (1일)	급 여 비 용 (30일)	본인부담금(월)			비급여 (월) 식대, 간식	(월) 합 계		
			일반 대상자	감경자	감경자		일반	감경	감경
			20%	12%	8%		20%	12%	8%
1 등급	88,520	2,655,600	531,120	318,672	212,448	345,000	876,120	663,672	557,448
2 등급	82,120	2,463,600	492,720	295,632	197,088	345,000	837,720	640,632	542,088
3~ 5등급	77,540	2,326,200	465,240	279,144	186,096	345,000	810,240	624,144	531,096

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(30일 기준입니다)

- 식재료비: 3,500*3식*30일= 315,000
- 간식비 500*2회 = 30,000
- 병원비(개인부담)
- 약제비(개인부담)
- 월 이용요금: 본인부담금(월) +비급여(식대,병원진료비,약제비, 물품구입비등)

8. 계약의 해지 및 종료

(1)요양원의 계약해지

- 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
- ②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2회이상 연체하였을 때
- ③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때
- ④ 입소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을 경우
(신체적,정신적 건강상태, 신상정보등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 등)
- ⑤ 지병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10일이상 장기입원 및 외박을 해야하는 경우
- ⑥ 공동생활에 부적응하시거나 입소자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경우

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, 민,형사상의 법적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.

(2) 입소자의 계약해지

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퇴소신청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제가 되는 것으로 한다.

- ①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
- ② 법적 부양의무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

3) 계약의 종료

- ①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
- ②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